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76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3일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한편,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

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조등금지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¹⁾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물질에 대하여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동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현행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환경부장관 고시(제2022-248호, 2022. 12. 20. 시행)에 따라 지정된 금지물질은 참고자료1(p. 8) 참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생략)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된 물질 또는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되거나 조사된 유해인자나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²⁾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①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고,

②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³⁾에 따라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내용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⁴⁾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⁵⁾

- 2)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3)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 5)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해당 물질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판매 허가만 받으면 됨에 반하여(현행법 제117조제2항제2호),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므로(「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 및 현행법 제117조제2항제1호)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제조등금지물질이자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磷)[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유사한 행정절차의 중복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입 승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금지물질에 대하여 수입 허가를 하는 경우 환경부 예규에 따라 지방환경청은 지방노동관서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바,⁶⁾ 현행 수입 승인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입 승인 없이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복규제 해소 차원에서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

6)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장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6.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및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가. 허가기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5년

나.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의견 조회

다. 금지물질 사용·판매계획서 검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지물질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에 판매하도록 조건을 부여